

□ 추진배경

- 「첨복단지 특별법」에 따라 **복지부·미래부·산업부·식약처** 등이 3년마다 **종합계획**을 수립·시행 → **첨복위원회**(위원장 총리) 의결
- *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 등

□ 1·2차 종합계획과 차이점

제1차 종합계획('11~'13)	제2차 종합계획('14~'16)	제3차 종합계획('17~'19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핵심시설 건축, 단지 조성 • 우수한 연구인력(기관) 유치 • R&D 기반 조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핵심인프라 활용 제고 • 제품화 중심의 공동R&D 추진 • 글로벌 수준의 연구환경 조성 • 협력적 네트워크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• 전략적 기업 지원으로 성과(활용) 극대화 • 보건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• 단지 운영 효율성 제고

□ 단계별 중점 추진전략

- **제1차 종합계획(조성기)** :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고 첨복단지를 컨트롤할 **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**을 단지별로 각각 설립
- **제2차 종합계획(정착기)** : 공동연구 및 기업 **지원서비스**를 본격 추진하고 제도 및 지원시스템 정비 추진
- **제3차 종합계획(성과 창출기)** : 기 수행된 종합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**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·제품화** 지원, 전략적 기업 지원을 통한 **성과 극대화, 운영 효율화**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

□ 주요내용

- 1) **수요자 맞춤형** 공동연구개발 및 **제품화** 지원 강화
 - 기업의 **요청·성공가능성**을 고려하여 **수요자 맞춤형** 공동연구개발 및 **기업지원** 서비스 강화
 - * **공동연구 R&D** 확대: ('17) 215억원 → ('18) 303억원 → ('19) 380억원
- 2) 전략적 기업 지원으로 **연구 성과(활용) 극대화** 및 확산
 - 첨복단지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**기업 지원**을 강화하여 **첨복 활용도**를 제고하고, **연구성과**를 극대화
 - * 입주기업 종합정보 제공 등 **개방형 플랫폼** 고도화 등
- 3) **원스톱 지원** 강화로 선순환적 **보건의료산업 생태계** 조성
 - 응용연구에서 전임상·임상에 이르는 **전주기적 연계** 지원을 강화하여 **보건산업 글로벌 허브**로 도약
 - * 연구중심 **선도기업** 유치,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**특례 확대**, 외국과 **협력** 강화
 - * 첨복단지 내 **첨단임상시험센터** 건립('16 설계~'19년 완공)
- 4) 첨복단지 **운영 효율성** 제고 → **자립도** 제고
 - **'19년** 자립도 목표 **39%**(대구 38%, 오송 40%), '25년 목표 **55%**
 - **첨복 자립**을 지원하기 위해 **제도 개선** 및 **거버넌스** 재정비
 - * 내부인건비 계상 등 허용 및 **거버넌스** 개편 등(~'17.9월)
 - * 신규 수익사업 발굴, 기술권 확보 등 수익구조를 다변화하여 **단계별로 자립화**
 - **첨복재단**의 연도별 자립도에 따른 **인건비·운영비 부족재원**에 대해 '17년~'19년에는 **국비와 지방비를 8:2 비율로 분담**
 - * '20~25년의 국비·지방비 분담비율은 재정당국과 지자체간 추후 협의

□ 소요재원 (예상)

(단위: 억 원)

구분 연도	총계	시설 /운영	R&D/ 기금조성	총계	국비	지방비	민간
(기투입) '09~'16	12,738	11,588	1,150	12,738	6,112	5,453	1,172
'17~'19	4,438	3,134	1,304	4,438	3,272	789	376

구분		기투입액 ('11~'16)	'17~'19 투자계획 (민간 미포함)			
3차종합계획	2차종합계획		소계	'17	'18	'19
합계		10,892	4,062	1,072	1,401	1,590
수요자 맞춤형 (공동)연구개발 및 제품화지원	핵심인프라 활용도 제고	5,563	1,488	265	503	720
	공동연구개발 강화	661				
보건의료산업 생태계조성	연구환경 조성	4,414	1,443	463	464	516
	협력적 네트워크 확대	254				
전략적 기업지원을 통한 성과(활용) 극대화		-	133	41	45	47
단지운영 효율성 제고		-	999	303	389	307

※ 연차별 재정소요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

□ 3년간 정부 및 지자체 투자계획 ('17년~'19년) : 4,062억원 예정

- 수요지향형 (공동)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: 1,488억 원
- 전략적 기업지원을 통한 성과(활용) 극대화 : 133억 원
-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등 보건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: 1,443억 원
- 단지운영 효율성 제고 : 999억 원

※ 연차별 재정소요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

□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

추진전략	과제번호	중점 추진과제
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및 제품화지원	1-1	신약연구개발 지원
	1-2	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
	1-3	(전임상) 동물실험 지원
	1-4	의약품 생산 지원
전략적 기업지원을 통한 성과(활용) 극대화	2-1	인프라 및 자원 활용성 제고
	2-2	체계적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기반 구축
	2-3	맞춤형 기업지원 컨설팅
	2-4	의료산업 전문인력 양성
보건의료산업 생태계 조성	3-1	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및 운영
	3-2	글로벌 수준의 연구환경 조성
	3-3	전략적 협력네트워크 구축
단지운영 효율성 제고	4-1	단지 운영 효율화
	4-2	신규 수익사업 발굴
	4-3	첨복단지 펀드 조성

□ 주요 부문별 세부 내용

구분	분야	세부내용	주관	협조
1. 수요자 맞춤형 (공동)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	1-1 신약 연구개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요자 맞춤형 신약파이프라인 발굴 및 공동개발지원 미래유망 플랫폼 기술 고도화 및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약품 성능 증진 및 가치 재창출, 신약개발 효율 증대기술 개발 수요기반 분석·평가 기술 지원 	재단	미래부
	1-2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공동연구 개발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반기술 및 수요자맞춤형 공동연구 개발 지원 사업 추진 단지별 특화된 연구개발지원사업 구성 및 운영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제품 제작, 시험검사, 신뢰성평가 	재단	산업부 복지부
	1-3 (전임상) 동물실험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핵심기반기술 공동연구개발사업 수요자 맞춤형 공동연구개발사업 특성화 동물모델 및 평가기법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부가가치 동물모델 구축을 통한 유효성 평가 지원 	재단	복지부
	1-4 의약품 생산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약품 생산 및 분석 지원 의약품 해외진출 지원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단지별 특성화방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대구) 공익적 목적의 의약품개발 및 공급 기능 수행 (오송) 원제시설 구축 및 원료시설 인프라 고도화 	재단	복지부

구분	분야	세부내용	주관	협조
2. 전략적 기업지원을 통한 성과(활용) 극대화	2-1 인프라 및 자원 활용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프라/자원의 공동 활용체계 효율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프라 및 자원 정보의 개방형 플랫폼 고도화 렌탈랩/ 교류랩 등을 통한 공동연구 및 창업지원 	재단	복지부 미래부 산업부
	2-2 체계적 연구성과관리 및 활용기반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R&D과제 관리 시스템 고도화 기술이전 활성화 기반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품질 IP 창출 플랫폼 기술이전 촉진 플랫폼 	재단	복지부
	2-3 맞춤형 기업지원 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주기업 종합지원프로그램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주기업 종합정보 제공 창업/성장/성숙 단계별 맞춤지원 수요중심의 인허가 지원 	재단	지자체 식약처
	2-4 의료산업 전문인력 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업체 재직자 대상 현장 실무형 맞춤 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R&D, GMP 등 직무 교육 예비전문인력 양성 등 현장실습교육 제품화 인허가 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허가 프로세스 및 법령이해, 기술 문서 작성 등 	재단 식약처	산업부 복지부

구분	분야	세부내용	주관	협조
3. 보건의료 산업 생태계 조성	3-1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및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센터 건립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- 산학연병 협력체계 구축 등 	자자체	재단
	3-2 글로벌 수준의 연구환경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중심 선도기업 유치 정주여건 개선 및 편의시설 운영 - 교통, 주거, 행정, 문화 기반시설확충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신속제품화 - 단지특례 확대, 신속제품화 우수인재유치 및 양성 	자자체 재단 삭약처	복지부
	3-3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내외 교류·협력 체계 구축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·운영 - 첨복발전협의회, 메디시티협의회, 입주 기업협의회, 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략적 홍보를 통한 위상 강화 	재단	복지부 지자체
4. 단지운영 효율성 제고	4-1 단지 운영 효율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운영 효율화를 통한 단계별 자립화 - 중간평가를 통한 자립도 관리 및 조정 - 국비/지방비 비율(8:2), 첨복단지를 범국가적 응용연구개발 인프라로 활성화 재단 위상 및 역할 명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- 이사회를 통한 재단 공동관리, 법령 개정 (제명변경, 종합계획 수립주기 변경 등) 	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재단	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재단
	4-2 신규수익사업 발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양하고 차별화된 기술서비스 모델 수립 및 추진 - 센터별 특성화된 수익모델 창출 첨복단지 고유 프로그램 개발 및 브랜드화를 통한 수익 창출 - 융복합 R&SD 사업 발굴 및 기획, 인프라 활용사업 추진 등 	재단	복지부 미래부 산업부
	4-3 첨복단지 펀드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개발·사업화 자금 유치 및 지원 - 신산업 자금 유치 및 지원 - 펀드 조성·운영을 통한 단지 활성화 	재단	지자체

□ 그간의 추진 경과

- 법적 근거 :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
- 제3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* 추진(재단, '16.8~12월)

*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」(신경제연구원)

- '16. 8. : 재단-용역팀 집계 작업 1차(8.3~5) /2차(8.11~12) /3차(8.25~26)
- 8. 31. : 제3차 종합계획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/지자체 1차 회람
- 10. :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간담회 (대구 : 10.13 / 오송 : 10.18)
- 11. 17. : 재단-부처 합동보고회 (경주)
- '17. 1. : 제도개선 쟁점사항 반영 및 부처 2차 회람
- 2. 10. : 제3차 종합계획(안) 전문가 자문회의 (STEPI, 진흥원, KTL)

- 첨복재단 자립화 방안 마련을 위한 3개부처(복지부, 미래부, 산업부) 공동 연구용역* 추진('16.10~1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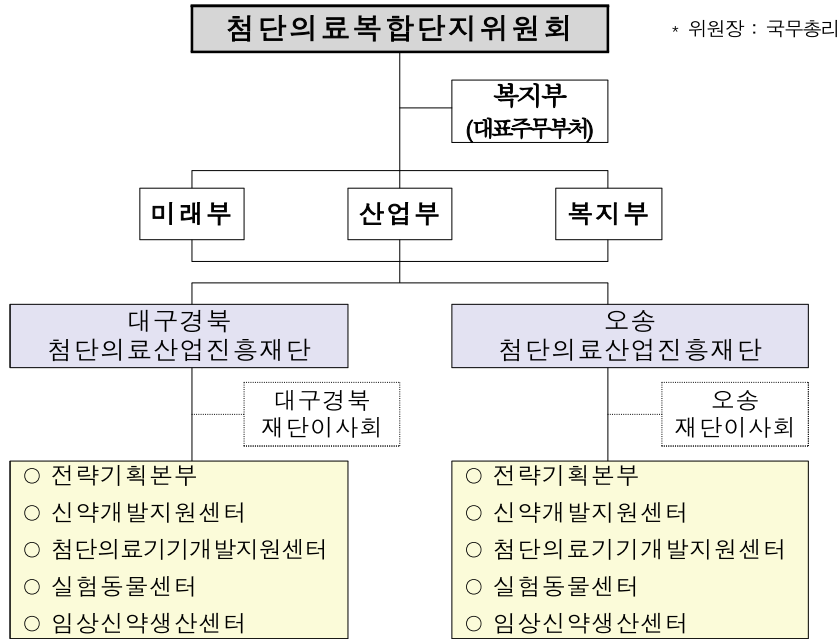
* 「첨복단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」(보건산업진흥원, 산업기술 시험원, 과학기술정책연구원)

- '16. 3~10. : 첨복 자립화 관련 관계부처·지자체·재단 실무협의 → 공동연구 결정
- '16. 11. 9. : 관련부처 회의
- 11.30. : 관련부처·지자체 회의
- 12. 8~9. : 공동연구팀과 재단(센터) 간담회 개최
- 12. 29. : 연구 최종결과 관련 관계부처·재단 합동간담회
- '17. 2월 : 관계부처·첨복재단 의견 수렴

- 제3차 종합계획(안) 마련(216) 및 관계부처 등 회람(1차, 217~ 228), (2차, 3.3~ 3.8)
-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(위원장 국무총리) 서면 심의(3.31~4.6)
-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(4.27) 및 심의·의결 통보(5.2)

첨단의료복합단지 참고자료

□ 관리·운영 체계도



□ 추진체계별 기능

- **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** : 첨복단지 육성 관련정책 심의·조정
- **대표주무부처(보건복지부)** :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및 대구경북·오송 첨복재단 운영 지원
- **소관부처(미래부·산업부·복지부)** : 소관센터 연구개발지원사업(R&D) 지원
 - 미래부 : 신약개발지원센터, 산업부 :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, 복지부 : 실험동물센터·임상신약생산센터(전임상·임상실험 등)
- **대구경북 및 오송 재단** : 각 단지 운영

□ 재정투입 실적 : 총 7,272억원, 대구(4,131억원), 오송(3,141억원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합계	오송	대구·경북	
합계	합계	727,212	314,096	413,116	
	국비	611,401	283,484	327,917	
	지방비 소계	115,811	30,612	85,199	
	대구·경북	85,199	-	85,199	
	충북	30,612	30,612	-	
세부 내역	R&D	합계	77,116	35,658	41,458
		국비	66,116	31,658	34,458
		지방비 소계	11,000	4,000	7,000
		대구·경북	7,000	-	7,000
		충북	4,000	4,000	-
	인건비	합계	71,194	35,151	36,043
		국비	61,819	30,428	31,391
		지방비 소계	9,375	4,723	4,652
		대구·경북	4,652	-	4,652
	운영비	합계	86,977	37,250	49,727
		국비	61,341	27,861	33,480
		지방비 소계	25,636	9,389	16,247
대구·경북		16,247	-	16,247	
장비비	합계	192,250	84,832	107,418	
	국비	192,250	84,832	107,418	
	지방비 소계	-	-	-	
	대구·경북	-	-	-	
건축비	합계	299,675	121,205	178,470	
	국비	229,875	108,705	121,170	
	지방비 소계	69,800	12,500	57,300	
	대구·경북	57,300	-	57,300	
	충북	12,500	12,500	-	

* 2010~2016년 국비·지방비 기준,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 센터 기준

제10조(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)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이 조에서 "운영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**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되,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방안 중 **추진일정 및 중복·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**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**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**한 후 **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**하여야 한다.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
2. 제11조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
4.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
5.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
6.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·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
7.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성과의 활용 및 전파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